

의안번호	제 325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278 회)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9년 3월 10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25
----------	-----

제출연월일 : 2009년 3월 10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이 타시도 보다 적게 지급됨으로 인한 근무의욕과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발췌 : 붙임

6.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생략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당직수당 지급) <u>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1인 3만원을 지급한다. 단, 숙직근무 개시일의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 근무자에 한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5만원을 지급한다.</u></p>	<p>제3조(당직수당 지급) <u>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u></p>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